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확대〉

■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79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준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08.
3. 회 부 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및 외국환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무역거래 관련 업무에 특화된 조직이나, 현행법상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적임.

그런데 최근 전통적 무역범죄를 넘어 외화자금 국외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범죄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을 제출하여 수출·수입 금지 범위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도 이를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다

양한 초국경 범죄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중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관세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 함(안 제6조제14호가목).
- 나.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 다.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위반 범죄를 추가(안 제6조제14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제5조제17호에 따른 「관세법」에 따라 관세법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하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①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방위산업 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범죄,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야생생물 불법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14. ----- -----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가. ----- ----- ----- -----

현행	개정안
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 바. (생략) <u><신설></u>	----- ----- ----- ----- ----- ----- ----- ----- ----- 나. ~ 바. (현행과 같음) <u>사.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34조의15, 제34조의17, 제34조의18, 제34조의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를 위반한 범죄</u>

현행	개정안
<u><신설></u> 15. ~ 50. (생략)	<u>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u> 15. ~ 50.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현황

□ 현행법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관세법」(이하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에 규정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 거래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 세관을 중심으로 총 502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음.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인원수 및 2023년도 검거실적 >

연번	본부세관	인 원		검거실적(2023년) (건수)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1	인천세관	79	77	4,524
2	서울세관	71	49	257
3	부산세관	60	48	580
4	대구세관	15	7	48
5	광주세관	19	16	124
6	평택세관	5	4	48
합계		249	201	5,581

자료: 관세청

- 현행 관세청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1,000건의 검거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2,2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관세청 수사권 범죄 검거 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관세		지재권		대외 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특경법 (재산 도피)		범수법		마약		형법 (문서인장죄)		보건 범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	1,045	9,264	176	2,602	108	1,369	113	6,525	7	362	10	302	696	1,592	11	-	62	694
'21	652	8,855	87	2,339	117	2,900	101	13,256	3	84	6	155	1,054	4,499	6	-	39	324
'22	837	7,877	99	5,639	103	4,670	123	63,084	3	82	3	180	771	600	12	-	44	216
'23	1,272	12,958	97	3,713	84	3,679	174	16,544	2	88	8	1,430	704	613	8	-	36	250
'24.11.	1,129	10,016	70	1,262	107	3,251	250	19,902	1	7	5	1,945	796	818	3	-	24	110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1~11.
연간 총 검거건수	2,228	2,065	1,995	2,385	2,385

* 문서인장죄 범칙금액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음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1)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 관련

□ 관세법 제235조²⁾는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해외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있었음.

○ 그런데 이러한 해외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관세법상 보호조치 대상이 지식재산권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해서는

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 7. (생략)

⑥ (생략)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통관단계에서의 유출을 차단할 근거가 없어, 2024. 12. 31.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제7호를 추가하여 관세법상 보호조치 대상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규정함³⁾.

□ 현행법⁴⁾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관세법 개정으로 추가된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은 이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도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세법(법률 제20608호)이 공포(2024.12.31.)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 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 중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경우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
- 통관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법 위반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경우 관련 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고 적발 현장에서의 증거수집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 수사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미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보호조치와 수사권을 함께 부여받고 있는바, 관세법 개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에 추가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호조치 대상과 수사 대상 범위를 부합시키는 것이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야생동식물 또는 외래생물 등 불법 수출입 범죄 관련

- 야생동식물 또는 외래생물 등의 불법거래는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법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

생물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 다양성법”)을 마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일부 야생생물이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등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각 주무관청의 승인·허가 또는 검역(야생동물과 그 사체, 생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식물 등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있음.

□ 한편, 관세법 제241조⁵⁾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226조⁶⁾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을 수출입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증명하여야 함.

○ 이에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상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야생동식물 등이 통관할 때 해당 물품과 함께 허가증, 검역증명서 등 해당 구비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5)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 그런데 최근 SNS 이용 확산 및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급증으로 야생 동식물 등의 불법거래가 지속되고 있는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를 적발하더라도 야생동식물 등의 밀수출입죄의 경우 실제 적으로 관세법상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만이 가능하여 관련 범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적발 현장에서 즉시 수사로의 전환을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입·수출·반입 또는 반출한 범죄,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됨.[관련 조문 : 참고자료1]

□ 개정안에 따라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상의 불법 수출입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의 전문성과 연계성,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⁷⁾상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7)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21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 수출입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무역범죄의 관하여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 범죄 특성상 야생동식물 등의 불법 수출입 거래는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바, 적발 현장에서의 신속한 증거확보 및 수사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3)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 관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남한과 북한 간 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경우 또는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 이를 위반한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무역경로는 단순경유(환적)하여 물품을 국내에 직접 반입하는 방식과 통관 후 국내 반입⁸⁾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각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 및 불법 반입에 대한 수사기관이 상이함.

○ 즉, 제3국 단순경유(환적)를 통해 물품이 국내로 직접 반입된 경우에는

8) 예컨대, 북한의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이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일반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 제3국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된 경우에는 관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음.

< 남북한 물품교류 방식에 따른 적용 법률 및 관리기관 >

구 분	적용 법률	물품 관리기관	수사기관
남북한 직교역	남북교류협력법	통일부 + 관세청	경찰·해경
제3국 개입 남북한 교역	관세법	관세청	관세청

□ 그러나 2가지 방식은 제3국에 대한 통관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느냐, 불법 남북교역 범죄의 대한 수사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 남북교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반출·반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됨[관련조문 : 참고자료2].

□ 개정안과 같이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무역범죄 수사에 있어 전문성과 형평성,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세법 제226조⁹⁾ 및 같은 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상 물품 반입승인서에 대한 구비 여부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그 과정에서 반입승인서를 불비하거나 위조된 승인서를 발견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상 범죄를 적발한 경우 현재에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므로 수사의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단속과 수사의 연계성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용이한 현장 접근성을 통해 혐의 적발 시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수사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 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9)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059

[참고자료 1] 개정안에 따라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있는 범죄

야생생물법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닳,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 ⑦ (생 략)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닐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② 삭제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⑥ (생 략)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

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생 략)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생 략)

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생 략)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34조의18(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생물다양성법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5. ~ 6. (생 략)

[참고자료 2] 개정안에 따라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있는 범죄

<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직무범위 관련 조문 >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참고자료 3]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4]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 ¹⁰⁾)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 10)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 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